

학교법인 장춘학원

2022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인	재적이사	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일시 : 2022. 11. 24.(목) 14:00~15:10 (회의소집 통보일 : 2022. 11. 14.)

2. 장소 : 안동과학대학교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 임원	이사 7인	신정용, 권기덕, 권재주, 임규봉, 서재수, 심용선, 김선웅	
	감사 0인		
불참 임원	이사 1인	김미현	
	감사 2인	금정호, 최 진	

4. 안건

- 1)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 2)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5)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공모 신청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7) 기타 사항

5. 회의내용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개회시간이 되어 사무국장이 참석임원을 보고하자 신정용 의장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심홍재 사무국장은 본회 회의안건에 대하여 보고하다.

간서명	의 장	신정용	이 사	서재수	이 사	임규봉
-----	-----	-----	-----	-----	-----	-----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1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수입 항목으로 기부금수입, 예금이자수입, 잡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일반관리비, 운영비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총액 35,890,170원의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하여 과목별 주요 내용 및 금액을 배부된 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기덕 이사의 동의와 서재수 이사의 재청,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2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2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이번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은 조정은 미 실시하였고 등록금회계 지출 항목 중 일반관리비, 학생경비, 기타교육외비용, 예비비 항목의 금액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수입 및 지출 총액 29,828,816,256원의 조정 내역을 배부된 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2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규봉 이사의 동의와 권재주 이사의 재청,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3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간서명	의 장	신정용	이 사	권기덕	이 사	임규봉
-----	-----	-----	-----	-----	-----	-----

(의안 제3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4(청렴의무),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에 근거 학교법인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법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72조의 5 제2항으로 규정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근거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과 「학교법인 장춘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에 대하여 배부된 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3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에 대해 법인 정관 제86조(청렴의무 등)를 신설하여 근거 조항으로 명시·개정하고, 기존 정관 제86조(설립 당초의 임원)는 제87조(설립 당초의 임원)로 이동하는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학교법인 장춘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에 대하여 권재주 이사의 동의와 권기덕 이사의 재청,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4호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4호)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간서명	의 장	신 정 용	이 사	권 재 주	이 사	이 기 덕
-----	-----	-------	-----	-------	-----	-------

(의안 제5호)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공모 신청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2022. 11. 10. 안동시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 안동시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질 높은 보육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안동시 옥동 소재) 위탁운영체 변경 모집을 공고함에 따라 대학에서는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해당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기 위해 해당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며, 해당 센터의 재원은 안동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법인의 현 재정상황으로는 부담금 출연은 어려운 상황임을 배부된 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추가사항으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공모 신청 시 본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함에 따라 「의안 제5호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공모 신청에 관한 사항」은 단일 건 내용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추가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5호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공모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동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육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계획하여 본 공모 신청을 추진하되, 우리 법인의 현 재정 상황으로는 해당 센터에 부담금 출연은 불가능한 상황임을 반영하는 내용의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공모 신청은 서재수 이사의 동의와 심용선 이사

간서명	의 장	신정용	이 사	서재수	이 사	심용선
-----	-----	-----	-----	-----	-----	-----

의 재청,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추가사항으로 본 의안 제5호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공모 신청에 관한 사항은 본 이사회 회의록 내용과 동일하게 단일 건 내용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추가 작성·서명 후 공모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6호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다.

(의안 제6호)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권기덕 이사는 신정용 의장과 서재수 이사, 임규봉 이사를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으로 선출할 것을 개진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권재주 이사의 동의와 김선웅 이사의 재청, 참석이사 전원 찬성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으로 신정용 의장, 서재수 이사, 임규봉 이사를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7호 기타 사항을 상정하다.

(의안 제7호) 기타 사항

신정용 의장은 기타 사항으로 의안 제4호의 의결내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비공개할 것을 개진하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권기덕 이사의 동의와 심용선 이사의 재청,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의안 제4호의 의결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심홍재 사무국장은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하다.

임원일동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법인 및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시다.

6. 폐회선언

신정용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15:10)

간서명	의 장	신정용	이 사	서재수	이 사	임규봉
-----	-----	-----	-----	-----	-----	-----

학교법인 장춘학원 의 장 신 정 용 신정용

이 사 권 기 덕 권기덕

이 사 권 재 주 권재주

이 사 임 규 봉 임규봉

이 사 서 재 수 서재수

이 사 심 용 선 심용선

이 사 김 선 응 김선응

※ (의안 제3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 정관	변경(안)
<신 설>	제86조(청렴의무 등) ①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임원 및 교직원이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1. 24.] [중전 제86조는 제87조로 이동<2022. 11. 24.>]
제86조(설립 당초의 임원) (생략)	제87조(설립 당초의 임원) (현행과 같음) [제86조에서 이동 <2022. 11. 24.>]
<신 설>	부칙<2022. 11. 2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의 장	이 사	이 사
	신설	신설	신설